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8

발의연월일: 2016. 8. 9.

발 의 자: 송옥주・이용득・진선미

박광온 · 신창현 · 유동수

어기구 · 한정애 · 우원식

윤후덕 • 이정미 • 김해영

최인호 · 이학영 · 유승희

김부겸 • 권미혁 • 서형수

홍영표 · 김현미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간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최근들어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임. 이런 중에,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던 한편,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와 하도급 근로 자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노동행정기관들이 이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 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 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 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 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근로시간과 휴식, 교육·훈련, 근무태도 및 작업성과의 점검, 사업장 출입, 사업장 내외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 나. 근로자의 작업방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 다.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 (원수급인을 포함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	2
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	
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	
동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u>신설></u>	<u>이 경우</u> 근로계
	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
	용자로 본다.
<u><신 설></u>	<u>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그 밖</u>
	의 금품, 근로시간과 휴식,
	교육·훈련, 근무태도 및
	작업성과의 점검, 사업장
	출입, 사업장 내외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 등 근로조
	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u>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u>
	하는 자

<신 설>

<신 설>

3. ~ 6. (생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 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 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 나. 근로자의 작업방식(「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 다.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원 수급인을 포함한다)

3. ~ 6. (현행과 같음)

----.. 다만, 제2 조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용 자와 그 사용자가 사실상 영향 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

	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
	동조합 사이의 교섭에 있어서
	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